



# 2025년 공동의회

| 안건

임마누엘서울교회 정관 개정

2025. 08.24



임마누엘서울교회  
IMMANUEL SEOUL CHURCH

## 전문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마누엘서울교회 전교인은 2013년 5월 31일 제정하고,  
2020년 9월 27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던 정관을,  
2024년 9월 23일 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25년 8월 24일  
공동의회의 결의로 승인하여 시행한다.

## 제1장 | 총 칙

###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서울교회 (이하 '본 교회' 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소속 및 소재지)

-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속한다.
- ②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994 (중대동)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신앙교리, 신조, 행정원리에 따라 예배와 전도 및 선교, 교육과 교제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정관 등의 적용)

- ① 정관은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으로서 공동의회에서 제정된다.
- ② 정관 이외에 당회의 의결로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③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소관 위원회에서 정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④ 정관은 규정에 우선하며, 규정은 시행세칙에 우선한다.

### 제5조 (총회 헌법과의 관계)

- ① 정관과 규정, 시행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헌법과 총회규범에 의한다.
- ② 정관은 본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헌법과 총회규범에 기속된다.

## 제 2 장 | 교인 및 직원

### 제6조 (교인의 권리)

모든 교인은 교회의 신앙주체로서 본 교회의 예배와 회무에 참여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무흠입교인(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할 권리가 있다.

### 제7조 (교인의 의무)

모든 교인은 정기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제8조 (직원의 구분)

- ① 교회의 직원은 시무정년까지 직분을 담당하는 항존직과 일정기간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다.

## 제 2 장 | 교인 및 직원

- ② 항존직에는 장로·안수집사·권사가 있다.  
장로 중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담당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 ③ 임시직에는 전도사와 서리집사가 있으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직원의 정년과 임기)

직원 및 사무직원의 정년과 임기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단, 당회장과 담임목사는 총회헌법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 (권징조례)

권징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의 권징조례를 따른다.

## 제 2 장 | 교인 및 직원

### 제11조 (안전 및 보건)

교회는 성도 및 사무직원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 장 | 공동의회

### 제12조 (공동의회의 구성)

- ① 공동의회는 본 교회 등록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원 중의장이 지명한다.  
당회장 부재 시 담임목사가 그 임무를 대신한다.

### 제13조 (공동의회의 소집)

- ①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 또는 담임목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1. 당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결의로 청원이 있을 때
  3.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② 당회장은 공동의회 1주일 전에 회의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후보와 예비광고를 통해 공고한다.

## 제 3 장 | 공동의회

### 제14조 (공동의회의 의결사항)

①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당회의 제안사항, 제직회의 청원사항,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당회가 의결한 규정의 승인
3. 담임목사 청빙
4. 장로·집사·권사 선거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교회의 폐지·분리·합병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② 공동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 당 회

### 제15조 (구성과 운영)

- ① 당회는 목사( 당회장, 담임, 행정)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 ② 원로목사, 은퇴장로, 명예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③ 당회에는 당회장 및 당회서기를 둔다.  
당회서기는 3인 이내로 하며, 제17조 제1항의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장로회장 중에서 제18조 제1항의 당회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당회장 부재 시 담임목사가 그 임무를 대신한다.
- ⑤ 당회는 당회장 또는 당회서기가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및 당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장이 1주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 제16조 (직무 및 정족수)

- ①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제 4 장 | 당 회

1. 교회 내 비복음적인 요소들과 성경에 위배되는 사안들에 대한 처리
2. 교인의 신앙과 교회생활 등의 지도
3. 예배 주관 및 교회기관·단체의 사업과 재정 감독
4. 교적부 작성 및 관리(세례, 입교, 유아세례, 학습)
5.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6.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 방안 수립
7. 노회 총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8. 교인 및 직원에 대한 권징
9. 교회 기본 재산 매입, 처분, 임대, 담보, 융자 등 운영 관리하는 전반의 일
10. 교역자의 채용 및 직원 선임과 임무배정
11. 구역장, 권찰의 임명
12. 교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13.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 및 감독
14. 규정의 제·개정
15.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6. 기타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 당 회

### 제17조 (위원회 및 부서 등)

① 당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고, 교회 각 분야의 사역과 운영을 책임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 명칭과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 교회의 조직구성 및 인사
2. 237선교위원회 : 237나라, 5천종족 복음화에 중심을 둔 선교사역
3. 치유복지위원회 :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역
4. 렘넌트서밋위원회 :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미래 지도자 양성
5. 대학청년위원회 : 대학과 청년세대가 오직 복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
6. 국내전도위원회 : 국내 모든 지역에 지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사역
7. 예배위원회 :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시스템 주관
8. 문화선교위원회 : 복음문화 조성 및 미디어 사역
9. 기획위원회 : 교회 전체의 복음적 기획업무와 사각지대 지원

## 제 4 장 | 당 회

10. 건축위원회 : 성전건축의 기획조정 및 건축

11. 행정위원회 : 교회의 성경적 행정총괄, 수입(헌금 포함) 및 지출업무 총괄, 교회재산관리, 사무직원 관리

② 각 위원회는 시무장로를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교역자, 시무장로 약간 명과 산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는 산하에 실행 부서를 두고 당회가 위임한 사역과 업무를 실행한다.

④ 위원회 산하 실행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당회에서 선임한다.

⑤ 당회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8조 (당회상임위원회)

① 당회는 당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회원 대표로 구성된 당회상임위원회 (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당회직무를 처리하며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 4 장 | 당 회

- ③ 상임위원회는 당회장, 담임목사, 행정목사, 각 위원회 위원장, 장로회장으로 구성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정국장, 행정국장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당회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당회서기가 상임위원회 서기가 된다. 당회장 부재 시 담임목사가 그 임무를 대신한다.
- ⑤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서기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장 | 제직회

### 제19조 (제직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제직회는 목사, 시무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회장이 되고, 행정위원장이 서기가 된다. 다만, 당회 의결로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직회는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및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이 1주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 제20조 (제직회의 의결사항)

- ①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구제와 봉사에 관한 업무
  3.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
  4. 제직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 ② 제직회는 제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 (교인의 권리)

- ①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등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 ② 교회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교회의 목적인 예배, 전도,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에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말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③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교회 재산의 관리와 보존)

- ① 교회재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 ② 교회재산을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 의결을 공동의회 의결로 간주한다.

### 제23조 (교회 금융재산의 예치)

- ①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은 본 교회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②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은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예치한 교회 예금, 기타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본 교회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 제24조 (교회 부동산의 등기)

- ①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한다. 다만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 ②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으로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은 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

### 제25조 (재정운용의 원칙)

교회재정은 청지기적 사명을 바탕으로 균형성, 투명성, 건전성 등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 6 장 | 재산과 재정

### 제26조 (재정수입)

-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헌금, 헌물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헌금은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 ③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제27조 (예결산 및 공시)

- ①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고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교회는 결산감사종료 후 아래의 예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 제 6 장 | 재산과 재정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산 및 부채목록
4. 감사보고서

### 제28조 (재정감사)

- ① 감사국은 연 2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는 그 개선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 제29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 7 장 | 보 칙

### 제30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상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칙<2025. 6. 15.>

### 제1조 (시행)

본 정관은 공동의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서울교회  
IMMANUEL SEOUL CHURCH

